규제사항 업데이트
2021년 3분기

mazars

서론
주요 개정 사항

2021년에 제안된 세법 개정안에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현황자료에 대한 제출의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에 대해 2년 연장, 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의 이전 가격 책정 방식에 대한 설명 등 외국인 투자 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항목이 포함됩니다. 이외에 세법 개정에 대한 몇 가지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다루는 다른 내용으로는 근로기준법 개정사항과 (급여명세서에 새로 요구되는 정보 등) 및 일부 감사 개정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 업데이트가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승하
파트너, 대표이사, 마자르 새빛회계법인

줄리앙 에르보
파트너, 마자르 새빛회계법인

세법 개정사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비교가능 거래대상 선정시 손실발생 기업 포함 가능 근거 신설 (국조령 제15조 7항 신설)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 시 고려사항의 하나로, 경기침체 등 경제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기업도 비교가능 거래 대상으로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됩니다.

*2022.1.1 이후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국회 본회의 의결로 세법 개정사항 최종 확정될 예정).

정상원가분담액 기준에 의한 과세당국의 결정·경정 시 불가항력 사유 고려 (국조법 제9조)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 하에서 이전가격 세제의 합리적 적용을 위해, 정상원가분담액 기준에 의한 과세당국의 결정·경정 시 고려사항으로 재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원가 등이 약정대로 분담되지 못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022.1.1 이후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국회 본회의 의결로 세법 개정사항 최종 확정될 예정).

국제거래자료 기한 후 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신설 (국조령 제100조)

과세관청이 국제거래자료 기한 후 제출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국제거래 자료를 수정제출 또는 기한 후 제출 시 30~90% 과태료 감경하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단,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

*영 시행일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특정외국법인 (CFC) 과세제도가 적용되는 외국법인 확대 (국조법 제27조)

기존 국조법에 따르면 특정외국법인을 통한 조세회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현행 기준의 (1)특정외국법인의 세부담률 판정기준을 당초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에서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25%)의 70%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2)특정외국법인의 범위에 '법인과세 신탁'을 포함하도록 개정됩니다.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국회 본회의 의결로 세법 개정사항 최종 확정될 예정)

세법 개정사항
법인세법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의무 신설 (법인법 제94조의 2항 신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기본사항, 외국 본사현황 및 국내 다른 지점 현황, 국내거래처 현황 등을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국회 본회의 의결로 세법 개정사항 최종 확정될 예정).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 (법인법 제50조의 2항 신설, 제113조)

기존 법인세법에 따르면 사업양수 시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을 양수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양수도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목적으로, 특정한 경우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여기서 특정한 경우란 (1)특수관계인 간의 양수도로서 (2)자산의 70%이면서 순자산의 90%이상을 이전하는 경우를 뜻하는데, 이 경우에 해당하는 양수법인은 기존사업과 양수사업을 구분경리하여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2022.1.1 이후 양수하는 분부터 적용 (국회 본회의 의결로 세법 개정사항 최종 확정될 예정).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 (소득법 제81조의 14항, 법인법 제74조의 2항 신설)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국회 본회의 의결로 세법 개정사항 최종 확정될 예정).

세법 개정사항
부가가치세법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거래명세 보관 • 제출의무 신설 (부가법 제53조의 2항)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국내에서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명세를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 이 신설됩니다. 과세관청이 제출요구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6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2.7.1 이후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국회 본회의 의결로 세법 개정사항 최종 확정될 예정).

세법 개정사항
소득세법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2항)

특정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5년간 종합 소득세율 또는 단일세율(20.9%, 지방소득세 포함)을 선택 적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종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됩니다 (국회 본회의 의결로 세법 개정사항 최종 확정될 예정).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특정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50% 내지 70% 감면해 주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소득세 감면으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에 따른 단일세율 적용시에는 감면 불가) 적용기한을 종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됩니다 (국회 본회의 의결로 세법 개정사항 최종 확정될 예정).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신설 (소득법 제150조)

세원포착이 어려운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자 등이 납세조합을 결성하여 원천징수•납부하는 경우 조합원에 대해 소득세액의 5% 세액공제하는 규정의 보완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방지 등을 위해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 (근로제공기간 등에 따라 월할 계산)의 공제한도를 신설합니다.

*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국회 본회의 의결로 세법 개정사항 최종 확정될 예정).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요건 개선 (소득령 제207조의 10항 1호)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용내국법인은 파견근로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때에, 지급금액의 20.9%(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특정 요건 중 근로대가 기준을 구체화 하고자 '파견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근로대가의 합이 연간 20억 초과'라는 현행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구체화합니다.

(1) 파견외국법인과 계약상 근로대가의 합

(2) 직전연도 실제 근로대가의 합 이 연간 20억 초과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 (국회 본회의 의결로 세법 개정사항 최종 확정될 예정).

세법 개정사항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24조)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기업의 R&D,시설투자에 대해 각각 R&D비용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지원 중에 있습니다.

현행 지원제도의 2단계 구조 '일반투자 및 신성장·원천기술투자'를 개편하여 3단계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신성장·원천기술보다 공제율을 확대합니다.

3단계 특정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할 경우 신성장원천기술 공제율 대비 R&D비용의 경우 10%p 상향, 시설투자의 경우 3-4%p 상향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021.7.1부터 2024.12.31 까지 R&D비용을 지출하거나 시설을 투자하는 분에 대해 적용 (국회 본회의 의결로 세법 개정사항 최종 확정될 예정).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별표7 등)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에 탄소중립 기술, 바이오 등 신산업 기술을 추가하여 공제대상을 확대합니다.

기존의 심의위원회 기능에 신규기술 도입여부 및 현행기술존치여부 심의기능을 추가하여 심의위원회 기능을 확대합니다.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종전 2021.12.31에서 2024.12.31으로 3년 연장합니다.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국회 본회의 의결로 세법 개정사항 최종 확정될 예정).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29조 7항)

코로나19에 따른 계층별·지역별 고용 양극화 완화를 위해 수도권 외 기업의 청년·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 증가 시 100만원 추가공제합니다.

해당 개정 규정은 2021년부터 2022년 고용증가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종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합니다.

*2021.12.31 및 2022.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증가 분에 대해 적용 (국회 본회의 의결로 세법 개정사항 최종 확정될 예정).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4항)

현행 규정상 공제기간동안 상시근로자수가 감소된 경우 잔여기간동안 공제 배제하였으나, 상시근로자수 감소시 공제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사후관리 규정을 강화합니다.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종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합니다.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부터 적용 (국회 본회의 의결로 세법 개정사항 최종 확정될 예정).

Security No.1
에스원
사랑으로
부 영
Hanwha
한화손해보험

감사법 개정사항
개정안 입법예고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출장 제한 등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를 조정하고, 기타 회계감독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위해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에서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조기 적용을 원하는 회사는 당초 정했던 시행시기에 맞추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산 규모	감사 시행시기 (변경 전)	감사 시행시기 (변경 후)
2조원 이상	2022년	2023년
5천억원 이상	2023년	2024년
1천억원 이상	2024년	2025년

인사급여
노동법 개정사항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7.1 적용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

적용범위		
적용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
주요 적용제외		• 노무제공계약 월평균소득 80만원 미만자 (2022년 1월부터 합산 가능) • 만 65세 이상 (단,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계속 가입 중인 자는 적용 대상)
보험료 징수		
보험료율		실업급여 1.4% (특고 0.7%, 사업주 0.7%)
수급요건	기여요건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이직사유	비자발적 이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 포함)
구직급여 지급		
지급수준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지급기간		120일~270일
소득활동 인정		수급기간 중 소득 발생시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구직급여 지급
출산전후 (휴가) 급여 지급		
기여요건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충족
지급수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지급기간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

2.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 2021년 7월 1일부터 5~4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 현행 : 50인 이상 적용 → 개정 : 5인 이상 적용

3.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 2021년 7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가 보장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급여상당액: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잔여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100% (월200만원 상한) 지원

-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2021년 7월 1일부터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를 지급해야 합니다.

4.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되어 업무량이 폭증하면, 특별연장근로 활용가능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49인 사업장 중 8시간 추가 연장근로[1]가 허용되지 않는 30~49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되어 업무량이 폭증하게 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는 내국인 구인이 어려워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기업이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1주 68시간 → 52시간)과 함께 외국인력도 공급받지 못하고, 동시에 8시간 추가 연장도 허용되지 않을 경우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이번 조치는 올해 하반기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외국인력 입국 지연이 해소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기업에서는 근로자의 동의 등 요건을 갖추어 고용허가서와 함께 지방노동관서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 기업에서는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 반드시 고용노동부 고시(4.6. 시행)에 따른 건강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1) 5~29인은 '22년 말까지 근로자대표 합의 시, 8시간 추가 연장근로 가능

인사급여
노동법 개정사항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21.11.19.)

- 2021.11.19.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은 법에서 위임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였으며,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성명
  -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 근로일수
  - 임금 총액
  - 총 근로시간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도 교부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과태료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30	50	100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20	30	50

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 (시행: '21.10.14.)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 사용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때 사용자의 친족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사용자에 준하는 제재 대상으로 포함했다.
-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자 한다.

  (1) 사용자의 배우자

  (2) 4촌 이내의 혈족

  (3) 4촌 이내의 인척

핵심 지표
주요세율 및 4대 보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2018년~2020년 귀속[1])
1,200만원 이하	6.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6.5%
4,6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	26.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8.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41.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4%
5억원 초과	46.2 %
10억원 초과	49.5%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1%
2억원 초과 200억원 미만	22%
200억원 초과 3000억원 미만	24.2%
3000억원 초과	27.5%

4대 보험

4대 보험	사업자 부담비율	근로자 부담비율
건강보험	월 평균보수 X 3.43% X 1.1152	월 평균보수X 3.43% X 1.1152
국민연금	월 평균보수 X 4.5%	월 평균보수X 4.5%
고용보험	월 평균보수 X (0.8% + 사업규모에 따른 추가보험료율)	월 평균보수 X 0.8%
산재보험	월 평균급여 X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0.7%~34%)	
총합	**월 평균보수의 약 10%**	**월 평균보수의 약 9%**

위 표에 기재된 사업규모 및 사업종류에 따른 추가보험률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보험률에는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포함하고 있음.

Contacts

마자르 새빛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90길 11,
용산더프라임 (업무동) 19층
04315

Tel: (+82) 2 3438 2400
Fax: (+82) 2 546 2368
Email: contact@mazars.kr

Seung-ha Park, 박승하
파트너, 대표이사, 세무
seung-ha.park@mazars.kr

Julien Herveau, 줄리앙 에르보
국제 데스크 담당
julien.herveau@mazars.kr

Jung-min Lee, 이정민
파트너, 회계감사 및 재무자문
jung-min.lee@mazars.kr

Gyu-taek Sim, 심규택
파트너, 회계감사 및 재무자문
gyu-taek.sim@mazars.kr

www.mazars.kr

마자르는 감사, 회계, 자문, 세금 및 법률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국제적 통합 파트너십입니다. 전 세계 9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마자르는 42,000명 이상의 전문가(마자르 통합 파트너쉽 26,000명, North America Alliance 16,000)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모든 규모의 고객사들의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합니다.

*해당 국가 법률에서 허용되는 경우

www.mazars.com

© Mazars 2021

본 발행물 제작에 참여한 Mazarians:

줄리앙 에르보, 박승하, 이정민, 심규택, 허영, 양지선, 심민규, 김온유, 신나래, 정한움

mazars